

장학위원회 규정

제정 2002. 3. 1. 전문개정 2013. 3. 1.
개정 2013. 7. 1. 개정 2014. 3. 1.
개정 2016.12.23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경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의 장학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.)를 둔다.

제2조(구성)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위원회는 교학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,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4.3.1.>,<2016.12.23.>
2.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교학처(학생팀) 직원으로 한다. <개정 2014.3.1.>

제3조(임기)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,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6.12.23.>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방침의 수립
2.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
3. 장학 규정의 개·폐에 관한 사항
4. 기타 관련사항

제5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7.1.>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